

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

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(☎ 044-201-3708)

- ▶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업·준주거·준공업·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.
-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한편,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합니다.
 - 특히,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 또는 이격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하고,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판매시설(3천㎡미만)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

<2014년도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 전환 내용>

- ▶ 추진배경 : 문화, 관광, 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융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창조산업 활성화 지원
- ▶ 주요내용
 - ① 도시지역(상업·준주거·준공업지역)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조례로 제한 가능한 문화, 업무, 교육연구, 방송통신, 관광휴게시설 등을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여 금지대상 최소화
 - ② 비도시지역(계획관리지역)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바닥면적 3천㎡미만 판매시설의 입지규제를 완화
 - ③ 준주거지역에서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 또는 이격되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규제를 완화
- ▶ 시행일 : 2014.1.17.